

22 경기중부노회및충남노회조사처리위원회 보고

제104회기 경기중부노회및충남노회조사처리위원회 사업경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보고인 : 위원장 김형국
서 기 라상기

1. 조직

- 위원장 : 김형국
- 회 계 : 임창희
- 위 원 : 김화중
- 서 기 : 라상기
- 총 무 : 황대근

2. 회의

1) 제1차 회의

☞ 일 시 : 2019. 11. 27(수)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아래와 같이 위원회를 조직하다.
위원장 김형국 목사, 서기 라상기 목사, 총무 황대근 목사, 회계 임창희 장로,
위원 김화중 장로
- ② 차후 회의 일자는 12월 4일(수) 오전 11시 총회회관에서 모이기로 하다.

2) 제2차 회의

☞ 일 시 : 2019. 12. 4(수)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제104회 총회 수입사항 확인의 건은 총회 임원회에 질의한 후에 진행하기로 하다.
- 질의내용 : 총회결의사항(현의)303호, 304호 충남노회가 경기중부노회를<경기중부노회가 충
남노회를>조사 처리해 달라는 안이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빠른 시일내에 통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위의 사항을 요약하면 A노회가 B노회를 조사처리 해달라는 것이 타당한지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3차 회의

☞ 일 시 : 2020. 5. 14(목)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제104회 총회 수입사항 확인을 위하여 당사자들을 불러 아래 일정대로 청취하도록 하다.
- 5월 22일(금) 오전 11시 : 경기중부노회(현의당시 노회장, 서기)



- 6월 11일(목) 오전 11시 : 충남노회(윤익세 목사, 현 노회장, 서기)

4) 제4차 회의

☞ 일 시 : 2020. 5. 22(금)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경기중부노회가 현의한 것에 대해 당시 노회장 최광영 목사, 서기 강만석 목사 출석하여 내용을 듣다. 당시 노회장 서기가 타 노회에 대하여 현의 한 것은 법적으로 잘못됨을 시인하고 사과하다.
- ② 차기 회의는 6월 11일(목) 오전 11시에 충남노회 출석하여 청취하기로 하다.

5) 제5차 회의

☞ 일 시 : 2020. 6. 12(금)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사설 신문(언론)의 사실과 다른 보도(참석하지도 않음)는 유감으로 생각하며, 대응하지 않기로 하다.
- ② 충남노회 현 노회장 윤혜진 목사와 윤익세 목사를 청하여 당시 상황을 청취하고 관련 근거 서류를 제출받다.
- ③ 차기 회의는 6월 18일(목) 오전 11시 총회회관에서 모여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하다.

6) 제6차 회의

☞ 일 시 : 2020. 6. 18(목)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보고서 초안을 만들어 수정 보완하고 차후 일정에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다.
- ② 차후 소집일시는 7월 28일(화) 오전 11시로 하기로 하다.

7) 제7차 회의

☞ 일 시 : 2020. 7. 28(화)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서기가 전회의록을 낭독하니 그대로 받기로 하다.
- ② 보고서는 별지와 같이 수정 완하여 받기로 하다.
- ③ 제105회 총회 보고서는 서기에게 맡기기로 하다.

경기 중부노회 및 충남 노회 조사처리 위원회 보고

헌의안건 303번 충남노회장 고석득씨가 헌의한 경기중부노회가 청원한 타노회 총대 조사처리 불법헌의안에 대한 조사처리건과 304번 경기 중부노회장 최광영씨가 헌의한 충남노회 측의 불법 조사처리하여 보고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양측을 불러(일정별로) ①경기중부노회 5월22일(금) 오전11시 헌의당시 노회장, 서기 ②충남노회(현 노회장 서기, 윤익세) 6월11일 오전11시 병합하여 처리하기로 하였다.

먼저 경기중부노회가 헌의한 것에 대해 당시 노회장 최광영 목사와 서기 강만석 목사가 출석하여 “충남노회를 처벌해 달라는 것”이 타당한 것처럼 말하였고, 충남노회가 헌의한 것에 대해 현 노회장 윤혜건 목사와 윤익세 목사가 출석하여 당시 상황과 관련 근거 서류를 제출하였다.

본 위원회는 결론부터 말하면 노회간 처벌해달라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I. 고소 고발은 치리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① 헌법적 규칙 제3조 교인의 권리에 보면 1항 “교인은 교회 헌법대로 순서를 따라 청원(請願) 소원(訴願) 상소(上訴)할 권리가 있다.” 2항 “교인은 지교회에서 법규대로 선거 및 피선거권이 있다. 그러나 무고히 6개월 이상 본 교회 예배회에 계속 출석치 아니한 교인은 위의 권리가 중지된다.” 하였다. 그러므로 치리회 안에 있는 회원도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남의 치리회에 속한 회원을 고소, 고발 할 수 없으므로 고소, 고발은 치리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② 권징조례 제15조에 보면 “기소인이 치리회에서 선정한 위원이 아니요 자의(自意)로 소송한 자이면 개심(開審)하기 전에 치리회는 먼저 경계하되 「송사가 허망하여 너의 악의와 경솔한 심사가 발현되면 형제를 휘방하는 자로 처단하겠다」 언명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치리권 밖에 있는 자의 고소고발은 할 수 없다.

③ 권징조례 제10장 제106조 “본 치리회 내 결의 사건에 대하여 투표권이 없는 자는 의의서와 항의서를 제출하지 못하고...”라고 하였다. 같은 치리회 안에서도 자격이 제한되고 있는데, 하물며 다른 치리회 회원이 다른 치리회에 이의나 항의를 할 수 없다.

④ 정치 제10장 제6조 2항에 “노회는 각 당회에서 규칙대로 제출하는 헌의와 청원과 상소 및 소원과 고소와 문의와 위탁판결을 접수하여 처리하며...”라고 하였기에 소속되어 있는 하회 치리회의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고소 고발을 받을 수 없다.

⑤ 제102회 총회 결의에 “산서노회장 조영기씨가 헌의한 특정 개인이나 교회 및 타노회를 상대로 한 무분별적 긴급동의안 처벌 규정의 건은 현행대로(타 노회가 소속이 안 된 회원을 처벌할 수 없음) 하기로 하다.”이므로 타 노회원을 처벌해 달라고 할 수 없다.

II. 치리회 간에 소원은 할 수 있다.

① 권징조례 제84조에 규정된 ‘소원’이라함은 “서면으로 상회에 제출하는 것이니 하회 관할에 속



하여 그 처리권에 복종하는 자 중 1인 혹 1인 이상이 행정 사건에 대하여 하회가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법한 행동이나 결정에 대하여 변경을 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소원도 처리회 안의 사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② 그러나 권징조례 제114조에 '처리회간의 재판 규례'는 "어느 회든지 그 동등된 회를 상대로 소원할 일이 있으면(제84조, 제93조 참조) 한층 높은 상회에 기소할 것이나 이런 경우에 사건 발생 후 1년 이내에 피고된 회의 서기와 그 상회 서기에게 통지한다"고 규정되었다. 그러므로 동등한 다른 처리회 간에 소원을 할 수 있으며 고소 고발은 할 수 없다.

③ 분명하게 권징조례 제114조의 처리회간의 재판규례는 고소 고발하여 재판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소원을 말한다. 제114조의 제 84조 93조를 참조하라는 토를 달았는데, 이 84조와 93조는 소원을 말하는 조문이기 때문이다. 소원이란 행정 건을 바로 잡아 달라는 것이지 누구를 처벌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행정을 바로 잡아 달라는 소원은 가능해도 누구를 처벌해 달라는 고소 고발은 불가능하다.

〈결론〉

처리회가 다를 경우 고소 고발을 할 수 없다. 그러나 동일 처리회가 한층 높은 처리회에 행정 소원을 할 수 있다. 행정소원은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아 달라는 것일 뿐 누구를 처벌해 달라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차체에 짚고 넘어갈 문제는 교단의 헌법이나 권징조례를 세상법과 비교하여 적용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 교단의 법을 충실하게 지켜 가면 된다.

〈처리결과〉

경기중부노회가 헌의한(당시 노회장 최광영 목사, 서기 강만석 목사) "충남노회를 처벌해 달라"는 헌의는 법적으로 잘못됐음을 시인하고 사과하였다.〈제4차 회의 시 (20년 5월 22일 오전11시)〉

또한 충남노회가 "경기중부노회의 불법성을 조사하여 처리하여 달라는 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이해를 시켰고 상대방이 총회에 고소 고발하여 맞불을 놓는 식이어서 이것도 불법이기에 할 수 없음을 지적하여 조사 처리 할 수 없음을 주지시켰다.